## 두류 중흥 S-클래스 (대자녀가구) 청약 안내

## ■ 공급 대상 및 자격 요건

구분	순위별조건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소형ㆍ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대구광역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미포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 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1년 이상 ~ 5년 미만	10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해당시 · 도거주 기간(5)	15	10년 이상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대구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 시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가는 이후가 국론가까가 기반시되는, 부는 부 국론자시부 시반시키, 주부분의 이후 시골, 이가, 반반시국 반세골 예상시 (부부분의).
입주자 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문 내용이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 및 공표 등으로 내용의 일부가 변경 될 수 있음을 미리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안내문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관련지침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과실로 인한 낙첨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